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미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안 제3조)
- 나.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안 제4조)
- 다.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15명 이내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안 제5조)
- 라. 위험도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설물에 부착 또는 표시(안 제8조)
- 마. 위험도 평가활동에 따른 관련 보험에 가입 및 각종 경비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 다. 기 타 : 조례안 불임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미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미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미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4조(위험도 평가 및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미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구미시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미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餘震)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나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③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미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며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재난방재 업무담당으로 한다.
-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정한다.
- ⑤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4. 그 밖에 구미시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구미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험도 평가단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⑧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 구미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미시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미시 본부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평가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구미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구미시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조치나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구미시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인근 시·군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미시 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구미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 본부장은 평가단원 및 평가반원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 운영 및 위험도 평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남 . 여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앞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 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뒷면>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전화 : 00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백상지 (150g/㎡)]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00-000-0000]

210mm×297mm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자 :
☐ 평가일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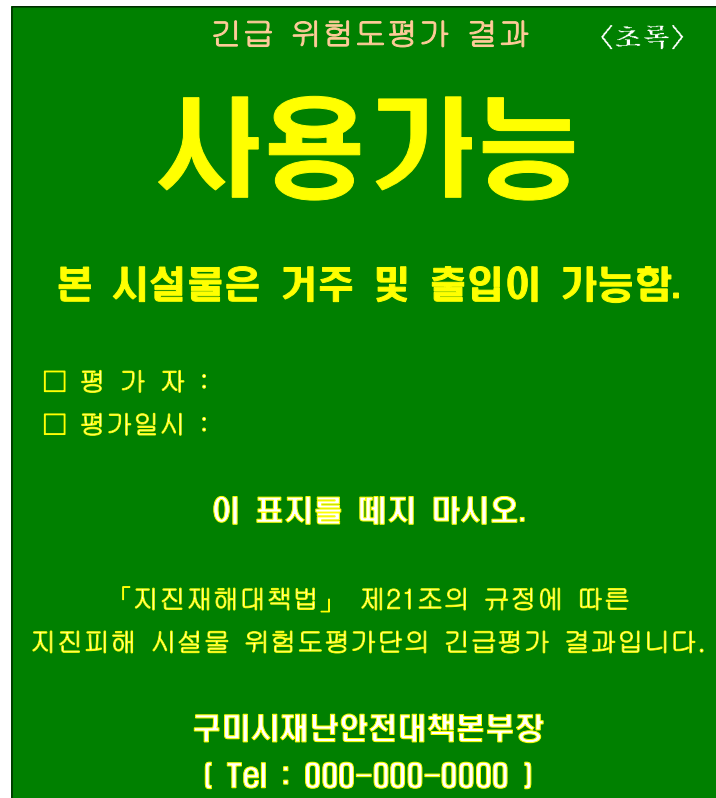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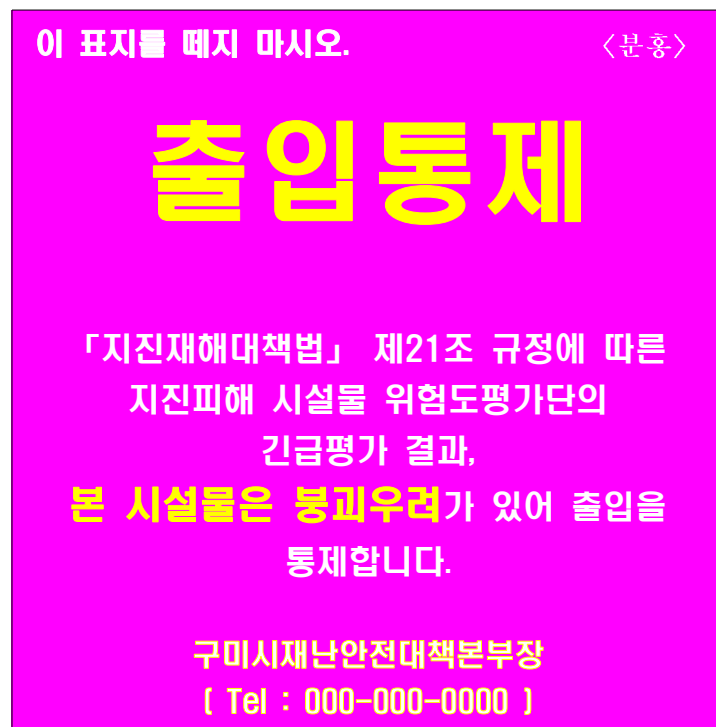
210mm×297mm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4.2.7] 제21조